##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62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태호·진종오·윤영석

배준영 • 조경태 • 고동진

정동만 · 서범수 · 박대출

김성원 • 박정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 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 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 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③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 지방자치단체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7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제1호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
	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
	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
	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
	<u>경을 요청할 수 있다.</u>
<u> &lt;신 설&gt;</u>	④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
	역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
	변 지방자치단체 주민, 관계 전
	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수원보
	호구역의 변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③</u> ~ <u>⑤</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u>⑥</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⑧</u>

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3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1. <u>제7조제5항 또는 제6항</u>
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1의2. ~ 11. (생 략)	1의2. ~ 11. (현행과 같음)
제87조(과태료) ① ~ ③ (생	제87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략)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1. <u>제7조제6항</u>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생 략)